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	IT검사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안기복 선임검사역	연락처	02-3145-7429	
요청대상 행위	업 외 내	정 업무 외에 전자 무를 수행하는 부서 부망 및 전자금융압 부망')과 분리한 경- 지 여부	l에 한하여 1무와 무관	전자금융업 ^및 한 기타 내부	구용 단말 후 정보처	기에 대한 업무망 리시스템('이하 기	을 존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	
판단이유	 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부터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통신망과 분리·차단 및 접속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(전자금융감독규제15조제1항제3호). ○ 다만, 동 규정은 망분리 대상으로서 "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시스템"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□ 한편,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전자금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, ○ 전자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과 분리·차단되었고, ②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서로 연계되지 않등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·운영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·안전확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, ○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(범령해석 200051) □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의 주된 업무의 성격이 전자금융업무해당하지 않고, ○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전자금융업무에 대해 외부망 및 기존 내부망분리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 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						부정 용 뿐 B 어는성 부다 에 과

- 다만, 망분리 규정이 적용되는 전자금융업무에 대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동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*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